

[붙임]

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 결과

(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법한 금융지원 결정 관련)

◇ (청구요지1) SK E&S의 해외 가스전 사업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법한 금융지원 결정 관련

- 청구인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SK E&S가 호주에서 추진 중인 바로사 가스전 개발사업에 각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결정한 것이 국내 법률 및 양사의 내규, 환경 관련 국제심사지침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

SK E&S가 요청한 금융지원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(이하 '수은')은 '22. 5월, 한국무역보험공사(이하 '무보')는 '21. 12월 각각 내부심사를 거쳐 승인하였으나 '22. 6월 호주 법원에 위 사업의 승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'23. 2월 현재까지 수은과 무보에서는 대출 또는 보증을 실행하거나 보험계약을 개시하지 않아 자금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발생한 손해도 없습니다.

또한 '22. 3월 위 가스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은과 무보의 금융지원 계약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소송이 한국 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은과 무보의 경우 위 사업 주체가 아니고 금융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에 불과하며 지출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'22. 5월 기각 결정하였습니다.

한편, 수은과 무보가 금융지원 심사 시 관련 법률, 내규 및 환경 관련 국제심사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수은과 무보는 위 금융지원 심사 시 관련 법률, 내규 및 국제심사지침 등에 따른 검토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위반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.

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감사의 실익이 없어 「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」 제2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“종결처리”하였습니다.